

특수건물의 보험가액 산출방법

김 권 직
〈보험 1 부차장〉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수건물(4층이상의 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홍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등)에 해당하는 모든
대상건물은 동법 제5조에 의거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1. 특수건물의 보험가액 산출방법

일반적으로 화재보험 계약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대개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요청하는 보험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따라 보험가액이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특수건물로 지정된 건물의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의2 (특수건물의 시가결정방법)에 의거 산정한다.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서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함이 입법취지에 합당 할 것이다.

(1)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장의 기계설비 및 부대장치에 대한 평가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

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고 이에 도매물가 상승률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회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서에 의한 가액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가액

다. 제 1 호 및 제 2 호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특수건물 시가결정 기준액표(이하 기준액표라 한다)에 의한 가액

(2) 제 1 항 제 3 호에 규정된 기준액표에 의하여 특수건물의 시가를 결정 하는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건축설계요령, 건축자재의 우열, 시공방법의 차등, 지역차, 용도, 사용기간에 따르는 감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이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제 2 항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특수건물의 시가를 가감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특수건물 시가조사회(이하 조사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4) 조사회는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 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건축사 1인
 - 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건축전문가 1인
 - 다. 한국감정원 원장이 추천하는 감정전문가 1인
 - 라. 대한기계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기계전문가 1인
 - 마. 기타 보험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인
- (5) 조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2. 기준액표상 업종별 적용기준

(1) 특수건물 시가기준액표는 건물의 용도별, 구조별, 규모별로 구조형태, 공법, 시공조건, 사용재료 등에 있어 일반적인 건물을 그 기준건물로 가정하여 신축가액을 산정하여 “중”급으로 하고, 이에 실내외 마감재료, 창호등의 정도에 따라 그의 “상” “하”급 건물을 정하였다.

(2) 그 기준건물 (“중”급) 및 “상” “하”급의 기초산출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특수건물 시가 결정기준액표를 참조도록 했다.

3. 보험금액 가감적용기준

(1) 특별법 시행규칙 제 2 조의 2 제 2 항에 의거 해당건물의 건축설계요령, 건축자재우열, 시공방법의 차등, 지역차, 용도, 사용기간에 따르는 감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 2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사용기간에 따르는 감기는 건물이 건축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건물은 건물의 유지관리상태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가할 수 있다.

5년이상 : 5%

10년이상 : 10%

15년이상 : 20%

다만 위의 기준이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지부장포함)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3) “상” “중” “하” 적용기준 및 가감적용기준에 의거 적정한 시가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내에 설치된 시가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보하여야 한다.



제8회 전국초·중·고학생 불조심 웅변대회

본 협회에서는 내무부 후원으로 화재예방의식을 범국민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국 초·중·고 학생 불조심 웅변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1984. 11. 13(화) 09:30
2. 장 소 :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
3. 내 용 : 화재예방에 관한 인식고취와 불조심 생활 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4. 대회구분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3개부문)
5. 시 간 : 초등부 : 5분
중·고등부 : 6분
6. 제출서류 : 원고1통(200자 원고지) 소속학교장추천서 1통, 명함판 사진2매
*원고 제출시 연락 전화번호 기재 바람.
7. 원고접수마감 : 1984. 10. 8(월)
8. 원고합격자발표 : 1984. 10. 18(목)
9. 연사예비소집 및 순위추첨 : 1984. 11. 12(월) 14:00

10. 접수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11. 시상
가. 전체특상1명 : 내무부장관 상장 상배 및 부상 … 1명
나. 각부문별최우수상 : 본협회 이사장 상장상배 및 부상 … 3명
다. 각부문별우수상 : 본협회 이사장상장 상배 및 부상 … 3명
라. 각부문별장려상 : 본협회 이사장상장 상배 및 부상 … 6명
12. 기타 : 자세한 내용은 본협회 홍보부나(직통 782-8156) 또는 각 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 782-8111~25, 783-2121~35 ● 부산 : 44-7053~5, 7185~7 ● 인천 : 882-5992, 883-5892
- 전주 : 2-2655, 8827 ● 대구 : 23-7838, 6349, 0490, 5011 ● 대전 : 22-2807, 23-6334 ● 광주 : 2-2279, 3087